

전문인력 이민법 개요

www.make-it-in-germany.com/en/visa/skilled-immigration-act

전문인력 이민법을 통해, 직업교육을 수료한 비대졸자 전문인력들이 취업 목적으로 독일에 이민오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대졸 전문인력에 대한 기존 규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더 완화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이민법이 시행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문인력 이민법을 통해 비 EU 국가 출신의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이민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정의:** 전문인력이란 대졸자 혹은 전 교육과정의 최소한 2년인 정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둘 다 전제조건으로, 독일 외에서 취득한 학위 혹은 자격을 독일 관할 인정심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 **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집니다 - 자격보유 전문인력은 고용계약서 혹은 구체적인 채용제안서와 독일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제시하면 됩니다. 연방고용공단을 통해 이행되어 왔던 소위 우선권 심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즉, 특정 일자리에 대해 독일인 혹은 EU 국가 출신지원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이제는 더 이상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방고용공단을 통한 노동조건 검토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 **고용기회:** 전문인력은 취득자격으로 수행 가능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관 직업 분야에서의 고용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졸 전문인력은 대졸을 전제하는 직업 외에도, 전문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자격과 관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채용 자격요건이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직업교육 수료자이면 충분한 다른 직종에서도 고용될 수 있습니다. 보조직이나 수련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직 고용이어야 합니다. EU 블루카드를 자신의 직업적인 전문자격에 상응하는 업무로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의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자이어야 합니다.
- **직업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 기존에는 직업교육을 수료한 비대졸자 전문인력의 고용이 인력부족 직업군에만 한정하여 허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독일이 인정하는 직업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은 전문직 노동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자격으로 수행 가능한 모든 직업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직 목적 입국 (취업준비):** 정규 직업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이 구직활동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6개월까지의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는, 독일 외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을 독일 관할 인정심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고, 체류 생활비에 대한 재정을 증명해야 하고, 추구하는 업무에 필요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동안에 최대 주 10시간 근무 기준의 수습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해외 전문인력이 서로 잘 맞는지 테스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부터 구직 목적으로 입국하여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대학졸업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에게도 수습고용제가 적용됩니다.
- **자격보충 교육을 위한 체류:** 독일에서 자격보충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독일 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독일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미달되는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독일 내 관할 인정심사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인정절차를 사전에 해외에서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확인서 발급). 또한, 자격보충 교육 이수를 위한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교육프로그램 등에 상응하는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A2 수준에 준하는) 충분한 독일어 능력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체류허가는 동일한 체류 목적으로 6개월 더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2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류허가가 만료되면 직업교육이나 대학진학 혹은 근로관계를 위한 체류허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전문인력 영주권:** 해외 전문인력은 4년 후에(기존 5년) 독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생 및 대학생:

- **교육처를 찾기 위한 입국:** 대학 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도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를 찾아 선택하기 위해 미리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에 따라 이제, 직업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도 직업교육훈련소를 찾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B2 수준의 독일어 능력, 해외 독일학교 졸업장 혹은 대학교 진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졸업장, 만 25세 이하, 생계비 자가부담 가능성에 대한 보장입니다.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독일어 코스:** 정규 직업교육을 위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독일어코스나 직업과 관련된 독일어코스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 진로전환 기회 확대:** 외국인 대학생들은 기존부터 이미 대학 전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다른 체류허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업을 계속하는 대신에 직업교육을 시작하면서 직업교육 이수를 위한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이민법을 통해 이러한 전환기회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정 전제 하에 연방노동공단의 심사를 거치면, 유학 혹은 직업교육이나 후속교육 체류기간 중에도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되면 전문직 노동 체류허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독일 직업교육 수료자의 영주권:** 신규 법규에 따라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도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 **전문인력 신속절차:** 고용주는 전문인력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독일 관할 외국인청의 전문인력 신속절차를 밟음으로써 비자발급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인,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 (외국인청, 연방노동공단, 인정기관, 재외공관)의 의무와 위임관계 및 절차, 당사자 정보, 기한 등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기업과 외국인청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외국인청은 고용주가 해외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노동공단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 외국인법 관련 발급요건을 검토합니다. 인정심사기관과 연방노동공단은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모든 전제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청은 소위 사전허가서를 발급하여 고용주에게 발송하고 고용주가 이를 전문인력에게 전달합니다. 전문인력이 재외공관에 비자신청할 일정을 예약하면 보통 3주 이내의 일정이 잡힙니다. 이 일정에 갈 때는 사전허가서 원본과 비자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전문인력이 비자신청을 빠짐 없이 하고 나면, 통상 3 주 이내에 비자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5. 동반가족 체류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신청을 동시에 함께 하면 전문인력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의 자녀도 전문인력 신속절차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6. 외국인청의 전문인력 신속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411 유로입니다. 그 외, 비자발급 수수료 75 유로와 자격인정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독일에서 전문인력으로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독일 외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독일 외에서 취득한 귀하의 자격을 먼저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상담센터인 „[독일에서 일하고 살기](#)“ 로 문의주시면 자격인정절차 및 독일 이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인정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외국 자격증 인정](#)“ 이라는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직업교육훈련소를 찾거나 혹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으로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독일입국을 원하는 경우는 물론, 자격보충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독일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독일어학습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독일어 배우기](#)“ 라는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자/체류 관련 담당자:** 아직 자국에 계실 경우, 해당 비자발급 담당처는 독일 재외 공관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기관](#)에 대한 정보는 세계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살고 계신다면, 체류 및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관할 외국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계신 지역의 담당 관할 관청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자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저희 사이트의 „[비자](#)“ 라는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